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12. 13.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17년 11월 13일
- 나. 발 의 자 : 정영출 의원 외 3명
- 다.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7일
- 라. 상정일자 :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17.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영출 의원)

가. 제안이유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전기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안 제4조)
-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안 제5조)
-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홍보 등(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권대광)

- 본 제정조례안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

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총 10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안 제4조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는 전기자동차의 운행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등의 주차요금 감면, 충전인프라 설치,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는 가스 및 소음이 적은 친환경자동차로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나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고, 연료비 또한 적게 들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¹⁾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 보급현황

(기준 : 2017.9월)

구분	전국	서울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보급	20,336대	3,530대	237대
급속충전시설	1422기	204기	11기

○ 그러나 아직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률은 전체 자동차의 0.1%²⁾에 그치고

1) 2017 환경부 지원계획 : 전기자동차 14,000대, 급속충전기 500기, 대당 보조금 1,400만원+ α

2) 2017. 9월 기준 전국 자동차등록수 : 22,375,311대, 전기차 20,336대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자료 통계

있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및 구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전기자동차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정영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4
----------	-----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일

발의자 : 정영출 의원 외 3명

1. 제안이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안 제4조)
- 나.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안 제5조)
- 다.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 등(안 제8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존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 (2017. 11. 8. ~ 11. 13.)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인프라”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 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충전기 관련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인프라 구축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과 이용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3. 구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입)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